책임투자를 위한 정책, 계획, 조직 및 활동내역

- □ 책임투자를 위한 정책 및 계획 ('20년말 기준)
 - 1) 기금운용지침

제17조(책임투자) ①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, 책임투자 원칙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

②「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」는 제1항을 목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책임투자에 대해 모니터 링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및 변경 의견을 「기금운용위원회」에 제시할 수 있다.

제17조2(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)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, 기금의 장기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「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」에 따라 이행한다.

제17조의3(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) ①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기금자산의 안정적인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한다.

- ②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- ③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④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의 기준,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「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」에 따른다.
- ⑤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,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 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,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/3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,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, 비공개·공개 중점관리기업선정, 주주제안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제외), 공개서한 발송 등 관련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「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」에서 결정한다.
- ⑥ 공단은 위탁운용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- ⑦ 「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」는 매년 「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」을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. 다만, 필요시 검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※ 책임투자와 관련하여,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필요한 정책을 점진적,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.

2) 책임투자 활성화방안('19.11) 로드맵

구분	AS-IS		TO-BE		
			'19.下	′20	′21~′23
1.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책임투자 전략 수립	ESG통합	 국 내 주 식 ESG 정기평가 (연2회) 컨트라면 이슈 모니터링 ESG평가면 개 산(연 1회) 		•국내주식 직접 - (액티브)강화된 ESG고려방식 검 토('20) 및 적용('21) - (패사브) ESG고려 적용	•해외주식 및 국내외 채권의 ESG고려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적용('21)
	기업과의 대화	• 국내주식의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수탁자책임활동 추진		•국내주식 환경(E), 사회(S) 관련 중점관리사안 마련 (가이드라인 개정) •해외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	• 국내주식 E, S 중점관리사안의 비 공개대한기업 선정 및 주주활동 추진 ('21) • 해외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시행 ('21~)
2. 위탁 운용 책임투자 내실화	책임 투자 위탁 펀드	•국내주식 책임투자 위탁펀드 운영 중		•BM 개발 및 적용 등('20~)	
	위탁 운용 사 선정 평가	• 운용사 조직인 력 역량 등을 기준으로 운용 사 선정 • 반기평가 또는 상시평가 추진		• 국내주식 책임투자 위탁펀드 'ESG평가보고서 제 출 의무화('20~)	•국내·외 주식, 및 채권 위탁운 용사 선정시, 책 임투자요소 고 려방안 마련 ('21),시행('22) •모나터링 결과 등 반영한 평기방안 마련('21), 시행('22)

	AS-IS		TO-BE			
구분			′19.下	′20	′21~′23	
3.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	책임 투자 원칙 등 제정	• 국민연금법 • 기금운용지침 (제17조) • 수탁자책임활동 에 관한 원칙 • 수탁자책임활동 에 관한 자침·가	•책임투자원칙 제정 및 기금운용자함에 반영 •수탁자책임활동 자침에 책임투자 관련시항 반영	•국내주식 E, S 관련 중점관사안 신설에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가 이드라인 개정		
	책임 투자 담당 조직의 역량 강화	PRI 가입('09.6') 월) 및 컨퍼런스 참석 *ACGA, ICGN 가입, 컨퍼런스 참석	• 주주간 협약회 참여		•해외 사무소 책임투자 인력 파견 및 확대 ('21~)	
	ESG 공시 등	•국민연금기금 연차 보고서에 관련사항 공개	•해외 연기금 책임투자 보고서 발간 사례 조사	•국민연금기금 연차보고서에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확대 개편	· 자본시장 참여자 (운용사, 증권사) ESG 고려 활성화 유도 적용 ('22') ·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연차 보고서 별도 발간 검토 추진	
	ESG 평가 체계 개선	•국내주식 ESG 정기평가(연2회) •ESG 평가명 개선(연1회) •컨트러버셜 이슈 모니터링		•ESG평가체계개선(E)중점관리사안 추가 선정 검토와 연계•해외주식 관련ESG리서치 기관선정 검토		

- □ 책임투자 조직 및 활동내역('20년말 기준)
 - 2013년 3월,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내 책임투자팀 신설
 - 2014년 8월, 책임투자 가상펀드 운용
 - 2015년 2월, 의안분석 전문기관 선정을 통한 의결권행사 전문성·객관성 제고
 - 2015년 11월, 사회책임투자형 펀드 신규 벤치마크지수 도입 (주식운용실)
 - 2015년 12월, 국내주식의 ESG 평가모형 구축
 - 2016년 4월,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관련 조항 마련
 - 2016년 12월, 국내주식의 ESG 평가시스템 구축 및 평가지표 개선
 - 2017년 7월, ESG 컨트러버셜 이슈 평가방법 마련
 - 2017년 12월,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코드에 관한 연구
 - 2018년 3월,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권한 확대 관련 지침 개정
 - 2018년 7월,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
 - 2019년 1월, 수탁자책임실(책임투자팀, 주주권행사팀)**로 개편, 국내주식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
 - 2019년 11월,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마련
 - 2019년 11월,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, 책임투자 원칙 도입
 - 2019년 12월,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및 지침 개정,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마련
 - 2020년 7월, 수탁자책임 연차보고서 발간
 - 2020년 11월 AIGCC(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,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) 가입
 - * 책임투자 관련 주요 활동은 제규정에 따라 공시되고 있습니다.
 - ** 수탁자책임활동의 의사결정 주체 등과 관련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」제5조(의사결정 주체 등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